

# 기사의 출처를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익명 취재원과 실명 취재원

위문지 동아일보 DX본부 전략팀 기자

최근 한 회사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다. “취재원을 익명으로 인용해야 하지만 파급력 있는 아이템과 실명 취재원을 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약한 아이템이 있다면 둘 중 뭘 고르시겠어요?”

후배는 반년간 심층보도를 통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히어로콘텐츠팀에 발령이 나 취재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었다. 필자를 비롯해 히어로콘텐츠팀을 경험한 기자들이 하나같이 ‘주인공을 실명으로 기사에 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뒤였다. 취재원이 실명으로 기사 전면에 등장할 때 독자들이 기사를 더 신뢰하고, 기사에 더 몰입한다는 경험에 기반한 조언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취재원을 도저히 실명으로 쓸 수 없을 것 같은 아이템도 있다. 후배도 이 부분에서 고민에 빠졌던 것 같다.

취재 내용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이다. 취재원의 이름과 직책이 명시될 때 독자들은 기사가 객관적으로 쓰였다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제 취재 현장에 있다 보면 기본을 지키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느낀다.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히어로콘텐츠팀은 하나의 취재 아이템을 정해 수개월을 취재한다. 그럼에도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취재원을 찾는 데 애를 먹는다. 취재원을 어렵사리 설득하고, 기사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맥락으로 발언이 인용될지 취재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그럼에도 취재원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내 이름은 빼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기자들은 기사가 발간되는 순간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하물며 매일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명 인용이 가능한 취재원을 찾을 여유가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취재원 익명 처리는 어느새 언론계 관행처럼 굳어졌다. 취재원이 익명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관행적으로 취재원을 익명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취재원이 본인의 이름을 써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에도 오히려 기자가 취재원을 익명으로 인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사에 익명 취재원이 많이 등장할수록 기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기자들은 현실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타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 익명 취재원 인용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언제 취재원을 익명으로 인용해도 괜찮을까. 취재원이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이렇게 설명한다.

“익명 출처를 사용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저널리즘 임무에 필수적일 수 있다. 이는 독자들에게 워싱턴, 월스트리트 그리고 그 너머에서 권력의 사용과 남용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익명 출처 사용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 취재원들은 때로 그들의 직업, 자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sup>1)</sup>

익명 취재원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큰 특종이 나오기도 한다.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보도에 큰 도움을 줬던 취재원, 이른바 ‘딥스로트’(deep throat)가 대표적이다. 딥스로트는 취재원이 누구인지 기사에 아예 밝히지 않는 ‘딥백그라운드’를 전제로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줬다. 딥스로트가 마크 펠트 당시 미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었다는 사실은 2005년에야 밝혀진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분위기상 민감한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취재원들은 본인의 정체성이 특정될 때 돌아올 후폭풍을 두려워한다.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도 적다. 특히 특정 분야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더 적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경우가 있다. 실제 필자가 담당했던 한 출입처에서는 출입처 관련 부정

<sup>1)</sup> Corbett, P. (2022). Why Does The New York Times Use Anonymous Sources?. <The New York Times>. URL: <https://www.nytimes.com/article/why-new-york-times-anonymous-sources.html>



적인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용의선상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할 때는 왜 이 사람이 기사에 인용될 만한 사람인지 배경을 써주는 것이 이상적이라고는 하나, 기사에 민감한 정보가 담길수록 자칫 취재원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쓰기 부담스러워진다.

## 익명 취재원의 위험성을 인지하자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익명 출처를 남발하기 위한 핑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익명 취재원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재원 익명 표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기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창숙 박사가 국내 주요 6개 신문사 사회부 취재기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실명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기자는 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나머지는 “취재원 익명 표기에 대해 문제의식이 부족”하거나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sup>2)</sup>

2) 김창숙 (2020). 한국 신문 사실확인 관행 연구: 주요 일간지 사회부 취재기자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3), pp.286-335.

익명 취재원은 기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에 위협이 된다. 기자가 취재원을 잘 알고, 취재원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익명으로 기사화했다고 하더라도 독자들은 내부 사정을 모른다. ‘고위 관계자’나 ‘소식통’이 기사 내용과 관련해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 독자들이 알 방법이 없다.

미국 언론 <NPR>(National Public Radio)은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공격 금지:** 익명 취재원이 다른 개인에 대해 낸 경멸적인 의견, 특정 기관을 비방한 발언을 보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중요한 비리, 성폭행 혐의에 대한 제보를 보도에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선임 뉴스 매니저와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
2. **위장 금지:** 취재원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그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선 이름을 쓰지 않을 수 있다. 성을 쓰지 않고 이름만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실명을 대체하기 위한 가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제안 금지:** 취재원이 본인을 인용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기자들은 그럴 결정을 내릴 만한 정보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인터뷰를 시작할 때 출처를 익명으로 하거나 비보도(off the record)로 유지하겠다고 먼저 약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보도용(on the record)으로 얻는 것이다.<sup>3)</sup>

익명 취재원 관행을 악용하는 기자들도 있다. 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거짓으로 익명 취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뉴스룸 내에서 익명 취재원 인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취재원의 실재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한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워싱턴포스트>의 재닛 쿡(Janet Cooke) 사건이다. 1980년 <워싱턴포스트> 기자 재닛 쿡은 ‘지미의 세계(Jimmy’s World)’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기사는 워싱턴 흑인 밀집 구역에 살며 이미 5살 때부터 헤로인에 중독된 8살 소년 지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지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보도 이후 워싱턴 당국에서 기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동네를 수색하지만 지미를 찾지 못한다. 지미가 실존 인물이 맞느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이듬해 쿡은 이 기사로 풀리처상을 수상하게 된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쿡의 전 직장 에디터(editor)가 <AP> 통신에 실린 풀리처상 수상자의 이력 관련 기사에서 쿡의 이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AP> 통신 기자에게 알렸고, 기자가 <워싱턴포스트>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쿡

3) NPR (n.d.). NPR Ethics Handbook: Special Section: Anonymous Sourcing. <NPR>. URL: <https://www.npr.org/about-npr/688745813/special-section-anonymous-sourcing>

의 이력이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걸 인지하게 된다. 수상함을 느낀 편집국장이 쿡에게 “24시간 안에 지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쿡은 결국 기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풀리처상을 반납한다.<sup>4)</sup>

## 취재원 인용 기준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이유를 밝히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가 익명 취재원 인용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사를 쓰는 것일 테다. 그러나 익명과 실명 사이 회색 지대는 넓다. 언론사 내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사에 등장하는 취재원을 검증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익명 출처를 인용할 때 아래의 내용을 고려한다.

“그들이 어떻게 정보를 아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동기(motivation)는 무엇인가?”

“그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걸 과거에 증명한 적이 있는가?”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가?”

익명의 출처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독자들의 신뢰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자와 최소한 한 명의 에디터는 출처의 신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고위 뉴스룸(newsroom) 에디터가 익명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sup>5)</sup>

이상적으로는 회사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테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언론사도 있고,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기자들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논의해 간단하게나마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고, 기사나 취재 후기 등을 통해 취재원을 익명으로 인용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친생부모에게 버림받거나 방임을 당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다뤘다. 당시 취재팀에서도 기사에 등장하는 아이들을 실명으로 보도해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독자들에게 설명했다.

“아동 유기, 방임을 주제로 잡은 뒤, 팀 내부에서도 ‘아이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우리의 목적은 명확했다. 더 이상 품을 잃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자

4) Green, B. (1981). Janet's World. <The Washington Post>. URL: <https://www.washingtonpost.com/archive/politics/1981/04/19/the-players-it-wasnt-a-game/545f7157-5228-47b6-8959-1c1cfa8f08eb>

5) Corbett, P. (2022). Op. cit.

는 것. 아동 유기와 방임이 기사를 통해 다뤄진다면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독자들이 아동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했다. 하지만 유기든 방임이든 명확한 범죄이고, 아이들은 범죄의 피해자다. 실명을 포함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자신의 정보나 신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결정할 수 없는 나이이기도 했다. 이 아이들의 신상을 보호자나 친권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도 논쟁거리였다. (중략) 그래서 실명 보도 원칙을 일부 포기했다. 조건은 두 가지였다. 아동이 △범죄 피해자이면서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가명을 사용했다.”<sup>6)</sup>

몇 년 전 특정 이슈와 관련해 흔치 않은 경험을 한 사례자의 이야기를 익명화해 리드 케이스로 쓴 적이 있다. 그때 한 온라인 독자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 맞느냐”고 댓글로 의문을 제기했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독자들은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 사실일 거라고 생각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누구나 쉽게 ‘사실 같은 거짓’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앞으로 독자들은 콘텐츠의 조작 여부를 기본적으로 의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사가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는 걸 증명해야만 한다. 🙏

6) 조유라 (2023). 우리가 가명을 쓴 이유. <히어로콘텐츠 인사이드>. URL: <https://original.donga.com/inside/article/all/82/4636219/1>